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

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제3항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이○용	1990.10.01.	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IAP수립을 위한 의무미이행 및 의무출석일 미방문 연락두절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82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 7. 4. ~ 2024. 7. 18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원정희(☎ 055-760-67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